



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



www.molab.go.kr

고용지원센터	연락처	FAX
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	02-2004-7371~82	02-720-3116
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	02-3468-4707~15	02-3468-4691
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	02-2142-8428~36	02-2295-8219
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	02-2077-6001~4	02-711-8175
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	02-2639-2401~8	02-2639-2419
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	02-2171-1801~5	02-985-6096
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	02-3282-9244~5	02-857-8219
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	031-828-0831~6	0505-130-0057
구리고용지원센터	031-564-1919	0505-130-0068
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	031-920-3910~14	031-906-7237
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	033-250-1927~9	033-250-1920
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	033-610-1914~7	033-610-1996~7
속초고용지원센터	033-637-2673~5	033-636-8219
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	033-734-9090~2	033-743-9313
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	033-552-8605	033-550-8660
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삼척출장센터	033-573-9911~5	033-573-9916
영월종합고용지원센터	033-371-6260	033-374-9729
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	051-860-2022~3	051-862-5928
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	051-559-2451~4	051-553-6038
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	051-330-9951~5	051-330-9970~3
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	055-239-0960~6	055-283-1919
마산고용지원센터	055-298-8219	055-299-8975
진해고용지원센터	055-547-6277~9	055-547-6280
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	052-228-1913~5	052-228-1918
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	055-330-6435~7	055-326-8219
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밀양출장센터	055-356-8225~6	055-356-8219
양산고용지원센터	055-370-0975~9	055-388-8219
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	055-762-8304	055-753-8215
하동고용지원센터	055-884-8219	055-884-7283
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	055-650-1811~6	055-646-8218
거제고용지원센터	055-637-5490~1	055-637-8279
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	053-667-6130~4	053-667-6105
경산고용지원센터	053-812-2462~5	053-812-2466
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	053-605-6551~5	053-605-6411~2
대구강북고용지원센터	053-606-8000~5	053-325-8219
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	054-284-1354~5	054-284-8219
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울진출장센터	054-783-0841~2	054-783-9441
경주고용지원센터	054-778-2500	054-776-7982
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	054-440-3360	054-440-3372~4
김천고용지원센터	054-431-2728~9	054-431-2730
영주종합고용지원센터	054-636-0646~8	054-632-8219

고용지원센터	연락처	FAX
문경고용지원센터	054-556-8220~2	054-556-8223
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	054-851-8055	054-857-1919
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	032-460-4811~6	032-428-0863
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	032-540-5737~40	032-540-5700~4
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	031-231-7851~8	031-231-7891
용인고용지원센터	031-289-2234~7	031-286-4549
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	031-646-1262~4	031-646-1220
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안성출장센터	031-671-1921~3	031-671-1927
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	032-320-8970~4	032-320-8919
김포고용지원센터	031-985-6011~4	031-983-9468~9
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	031-463-0782~6	031-463-0789
광명고용지원센터	031-2688-8141~2	031-2688-5066
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	031-412-6940~5	031-439-1904
시흥고용지원센터	031-412-1900	031-498-1989
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	031-739-3168~72	031-732-8218
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이천출장센터	031-632-9800~2	031-635-8219
광주고용지원센터	031-762-5791	031-766-8216
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	062-609-8650	062-609-8699
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	063-270-9210	063-270-9191
정읍고용지원센터	063-532-8216	063-532-8219
남원고용지원센터	063-631-1919	063-632-8216
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	063-839-0042~51	063-834-7364
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김제출장센터	063-548-1921~2	063-548-8219
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	063-4500-547~9	063-4500-594~6
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부안출장센터	063-581-7637~9	063-581-7641
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	061-280-0531~48	061-283-8218
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강진출장센터	061-434-7791~2	061-434-7793
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	061-720-9131~40	061-720-9151~4
여수고용지원센터	061-650-0140~7	061-650-0250
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	042-480-6011~7	042-486-8219
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금산출장센터	041-751-3219	041-753-4219
공주고용지원센터	041-854-8219	041-854-4219
공주센터논산출장센터	041-736-8219	041-736-8217
공주센터연기출장센터	041-865-3219	041-862-4219
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	043-230-6711~6	043-230-6710
옥천고용지원센터	043-731-7414~5	043-731-7681
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	041-620-7442~6	041-565-2062
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	043-850-4010~2	043-854-7764
제천고용지원센터	043-652-1919	043-652-9092
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	041-930-6251	041-934-8219
서산고용지원센터	041-669-1919	041-681-7766

2008년도

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

건설 현장기능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절적 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
노동부
Ministry of Labor

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?

❖ 건설현장근로자는 대부분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종사하면서 비, 눈, 기온 등 계절적인 기후 요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

❖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이러한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(1개월이상) 고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**계절적 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**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은?

❖ 하절기, 동절기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(무면허 사업주 제외)에 대하여 지원합니다.
(※관련 법령에 의하여 면허, 허가, 등록 등을 받은 사업주)

❖ 건설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을 갖추고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

지원요건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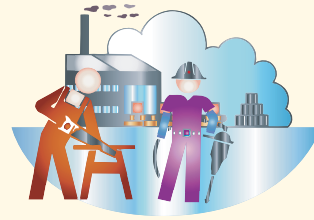
❖ 하절기, 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**월 6일을 초과**하여야 합니다.
※ 하절기 : 6월 ~ 8월('08년은 7월 1일부터 시행),
동절기 :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.

❖ 월 6일 초과 공사중지일수 중 눈, 비 또는 기온 등 **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이 입증되는 날**에 대하여만 지원합니다.

❖ 「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」에 대하여 지원합니다.
※ 사무직종사자,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(현장관리자 포함),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

지원금액은?

❖ 기상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**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/3(1일 상한액 35,000원)**를 지원 합니다.



지원절차는?

❖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하절기, 동절기에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 미리 **계속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신고**하여야 합니다.

❖ 공사기간, 근로자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**사전에 계속고용변경계획 신고**를 하여야 합니다.

❖ 사전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**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**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신청서류는?

❖ 계속고용계획 신고시 구비서류 : 계속고용계획 신고서 및 첨부서류
※ 첨부서류는 (사업자 등록·면허·허가관련 서류), 도급 계약서,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, 대상자별 근로 계약서 각 1부.

❖ 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 : 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및 첨부서류
※ 첨부서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,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, 임금이체내역 등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,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기상자료 등) 1부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